

의안번호	2211426
의 퇴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5.8.7.
추계번호	25D37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57억 4,300만원, 2031년 680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087억 6,000만원(연평균 617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상금	55,725	58,580	61,579	64,730	68,045	308,659	—
기타 지원	교육지원	2	2	2	2	10	—
	의료지원	7	7	8	9	40	—
	대부지원	9	10	10	11	51	—
합계	55,743	58,599	61,599	64,752	68,067	308,760	61,75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유족 또는가족의 범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자녀대 중 1명을 선순위 손자녀로 함(단서)	의무규정
2	안제12조(보상금)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또는 그 이하의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최초 보상금 수급자와 그 자녀대 각 1명에 한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대 사이에서 이전되지 아니함(단서)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
2	안 제12조(보상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상금(안 제12조), 교육지원(안 제5조 및 제15조), 의료지원(안 제5조 및 제17조), 대부지원(안 제5조 및 제18조)을 합산하여 추계함
 - 다만, 취업지원(제16조) 등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수급인원 증가분(안 제12조제2항)은 손자녀 보상금 지급제한 규정(제1호, 제2호)의 삭제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이 부여되는 인원(2,363명)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이 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수권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독립유공자 수권자 현황: 2025.6. 기준

(단위: 명)

보상금 지급자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합계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녀	증손 등	소계		
5	3,835	2,432	120	6,392	2,625	9,017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중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추가 인원

(단위: 명)

구 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합계
	1~3등급	4등급	5등급			
손자녀	88	173	651	94	413	1,419
손자녀의 자녀	81	228	312	89	234	944
합계	169	401	963	183	647	2,363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배우자 외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은 최근 5년(2021~2025년) 보상금 지급단가 인상률¹⁾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4] 독립유공자 유족(배우자 외) 보상금 월 지급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1~3등급	3,200	3,364	3,536	3,718	3,908
4등급	2,666	2,802	2,946	3,097	3,255
5등급	2,165	2,276	2,393	2,515	2,644
건국포장	1,545	1,624	1,707	1,794	1,886
대통령표창	1,030	1,083	1,138	1,196	1,2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외 지원대상 증가분(안 제5조제1항제3호)은 최초 등록 직계비속 자녀대 중 1명은 그 직계비속(증고손자녀) 인원과 동일하다²⁾고 보며, 추계기간 동안 증가율을 적용한 다음의 인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보상금 외 지원대상 유족 증가분: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직계비속의 자녀대	136	140	145	151	156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배우자 외 유족, 보상금 월 지급액>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상률
1~3등급	2,370	2,489	2,626	2,757	2,895	5.13%
4등급	1,975	2,074	2,188	2,297	2,412	5.12%
5등급	1,604	1,684	1,777	1,866	1,959	5.13%
건국포장	1,145	1,202	1,268	1,331	1,398	5.12%
대통령표창	765	803	847	889	933	5.09%

- 2) 최근 5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증·고손자녀(직계비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가율
증·고손(최초 등록)	106	114	118	118	122	3.58%

자료: 국가보훈부

- 본 추계에서 보상금 외 지원사항(의료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의 추가재정 소요는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년(2020~2024년) 증감률(교육지원, 의료지원) 또는 평균치(대부지원)³⁾를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최근 5년 독립유공자 교육지원 인원 및 단가 추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인원(명)	741	749	700	601	573	△6.23%
예산(백만원)	1,491	1,411	1,331	1,237	1,087	△7.60%
단가(백만원)	2.01	1.88	1.90	2.06	1.90	△1.40%

최근 5년 보훈병원 의료지원 실적(60% 감면진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지원액(백만원)	45,807	48,323	48,629	53,878	60,623	7.26%
진료연인원(명)	727,393	750,428	728,030	801,171	818,852	—
의료지원대상자(명)	1,309,021	1,305,069	1,304,985	1,308,232	1,311,691	—
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
진료단가(원)	62,974	64,394	66,795	67,249	74,035	4.13%

최근 5년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인원 및 단가 추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대상자(명)	8,351	8,558	8,761	8,859	8,964	8,698
직접 용자	인원(명)	149	85	104	101	105
	지원율(%)	1.78	0.99	1.19	1.14	1.21
	단가(백만원)	3.6	8.2	5.5	4.5	5.3
이차 보전	인원(명)	523	359	378	434	413
	지원율(%)	6.26	4.19	4.31	4.90	4.75
	단가(백만원)	6.04	9.27	8.25	7.01	7.4
	보전율(%)	0.49	0.41	1.48	3.27	1.72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상금(안 제12조제2항)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의 추가재정소요는 보상금 수급인원 증가분 [표 3]에 훈격별 보상금 월 지급액 추정[표 4]을 적용하여 연도별 보상금 지급액을 추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 상 금	1~3등급	6,489	6,822	7,172	7,539	7,926	35,948
	4등급	12,826	13,484	14,175	14,901	15,665	71,051
	5등급	25,018	26,301	27,649	29,066	30,555	138,589
	건국포장	3,392	3,566	3,748	3,940	4,142	18,788
	대통령표창	8,000	8,407	8,835	9,284	9,757	44,283
합계		55,725	58,580	61,579	64,730	68,045	308,6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교육지원(안 제5조 및 현행법 제15조)

- 개정안에 따른 교육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교육지원 대상인원(유족) 증가분에 교육지원 비율(0.76%)과 교육지원 단가 증감률($\Delta 1.4\%$)을 적용하여 추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교육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교 육 지 원	유족 증가분	136	140	145	151	156	-
	교육지원 비율	0.76%	0.76%	0.76%	0.76%	0.76%	-
	교육지원 대상인원	1	1	1	1	1	-
	교육지원 단가	1.82	1.80	1.77	1.75	1.72	-
합계		2	2	2	2	2	1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료지원(안 제5조 및 현행법 제17조)

- 개정안에 따른 의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의료지원 대상인원 증가분에 수진 횟수와 의료지원 감면단가(60%)를 곱하여 추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의료지원의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의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의 료 지 원	대상인원 증가분	136	140	145	151	156	—
	수진횟수	0.6	0.6	0.6	0.6	0.6	—
	감면단가(단위: 원)	83,588	87,039	90,632	94,374	98,270	—
합계		7	7	8	9	9	4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대부지원(안 제5조 및 현행법 제18조)

- 개정안에 따른 대부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대부지원 대상인원 증가분에 대부 지원율, 대부단가, 이차보전율(이차보전만 해당)을 적용하여 추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대부지원의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대부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인원 증가분		136	140	145	151	156	—
용 자 금	직접대부 지원율	1.21%	1.21%	1.21%	1.21%	1.21%	—
	직접대부 단가	5.3	5.3	5.3	5.3	5.3	—
	소계	9	9	9	10	10	47
이 차 보 전	위탁대부 지원율	4.75%	4.75%	4.75%	4.75%	4.75%	—
	위탁대부 단가	7.4	7.4	7.4	7.4	7.4	—
	이차보전율	1.72%	1.72%	1.72%	1.72%	1.72%	—
	소계	1	1	1	1	1	4
합계		9	10	10	11	11	5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57억 4,300만원, 2031년 680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087억 6,000만원(연평균 617억 5,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상금		55,725	58,580	61,579	64,730	68,045	308,659	—
기타 지원	교육지원	2	2	2	2	2	10	—
	의료지원	7	7	8	9	9	40	—
	대부지원	9	10	10	11	11	51	—
합계		55,743	58,599	61,599	64,752	68,067	308,760	61,75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 단가 증감률의 과거 추이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이 시행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